

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15-1번지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처리하고,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13일

강 남 구 청 장

- 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15-1번지
- 3. 정비구역의 면적 : 20,876㎡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태인
- 5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28,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조합사무실
- 6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7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 : 2026. 2. 10.
- 8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최고높이(m)	건축물의 주된 용도	층수
18,499.4	23.85	299.86	55,472.7171	113.1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지하3층 ~ 지상35층

9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공급구분	주택의 형태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
				60㎡이하	60~85㎡미만	85㎡이상
계		4	483	168	219	96
분양	아파트	4	422	107	219	96
임대	아파트	-	61	61	-	-

10. 정비사업의 주 변경사유

- 서울시 통합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등 변경
-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

11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에 관한사항

종 류	규 모(m ²)	시 행 자	비 고
도 로	1,434.3	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	
연결녹지	942.3	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	

12. 의제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- 「주택법」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등
- 「건축법」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- ※ 기타 의제 사항 표기 생략

13.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76)에 비치 보관